

가천대학교 의과대학/의학전문대학원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가천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대학(원)”이라 한다)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대학 및 대학원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가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따른다.

제 3 조 (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) ① 대학(원)에 의학전문대학원장을 겸임하는 학장 (이하 “학(원)장”이라 한다.) 1인을 둔다.

② 학(원)장은 대학(원)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임한다.

③ 학(원)장은 대학(원)의 행정을 총괄하고, 학사과정 및 대학원 학생의 교육과 연구 활동 및 연구.지원.부속시설 운영을 관장한다.

제 4 조 (부학(원)장) ① 대학(원)에 교무부학(원)장, 학생부학(원)장, 연구부학(원)장, 의학교육부학(원)장, 기획부학(원)장을 두며,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(원)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부학(원)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학장을 보조한다.

1. 교무부학(원)장은 학생의 입학, 졸업, 학적과 교원, 조교의 임용 및 평가, 수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교무에 관한 사항
2. 의학교육부학(원)장은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, 수업관리(의예과, 의학과 및 의학대학원) 및 평가, 의학교육실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
3. 학생부학(원)장은 학생의 보건·후생·상벌·동원·장학·집회·훈련·병사와 기숙사, 보건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4. 연구부학(원)장은 학술연구·연구비 관리, 연구 기자재 관리, 관할 연구소(원)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연구에 관한 사항
5. 기획부학(원)장은 발전계획 수립, 예산 및 대외 관련 업무, 기획위원회 업무, 발전기금조성 및 관리, 대외.국제협력 및 비전추진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기획에 관한 사항

제 5 조 (의예과 및 의학과장) ①의예과 및 의학과에 학과장을 두되, 교수 중에서 학(원)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교수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.

②학과장은 학과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학생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학(원)장을 보조한다.

제 6 조 (부장 및 담당교수)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부학(원)장과 학과장을 각각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부장 및 담당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.

제 7 조 (행정실장) 대학(원)에 행정실장은 서무·시설 업무를 담당하며, 제반 행정 업무에 대하여 학장을 보조한다.

제 8 조 (전공) ①대학(원)에는 학사운영단위로 다음과 같이 전공을 둔다.

②기초의학 분야에는 해부학전공, 생리학전공, 생화학전공, 병리학전공, 약리학전공, 미생물학전공, 기생충학전공, 분자의학전공, 유전체외과학전공, 뇌과학전공, 의공학전공 및 법의학전공을 둔다.(개정 2016.11.29.)

③임상의학 분야에는 내과학전공, 외과학전공, 산부인과학전공, 소아청소년과학전공, 정신건강의학전공, 신경과학전공, 피부과학전공, 정형외과학전공, 흉부외과학전공, 신경외과학전공, 비뇨기과학전공, 이비인후과학전공, 안과학전공, 영상의학전공, 마취통증의학전공, 성형외과학전공, 방사선종양학전공, 진단검사의학전공, 재활의학전공, 핵의학전공, 가정의학전공, 응급의학전공, 치과학전공, 직업환경의학전공 및 외상학전공을 둔다.

④인문사회의학 분야에는 예방의학전공, 의학교육학전공, 의료인문학전공, 의료윤리학전공, 의료법전공, 의료정보학전공, 의사학전공 및 의학통계학전공을 둔다.(개정 2015.11.01.)

제 9 조 (교수임용) ①교수임용은 학과 및 전공 단위로 한다.

②필요시에는 학(원)장은 교수의 소속 전공 배정을 임용 후에 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주임교수) ①각 전공에 1인의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주임교수는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(원)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교수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.

③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주임교수회) ①대학(원)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임교수회를 둔다.

②학(원)장은 필요한 때에 주임교수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③주임교수회는 학(원)장, 부학(원)장, 전공 주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주임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회의 참석이 어려운 위원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신규 임용 교원의 교육) 신규 임용 교원은 소속 및 직급에 관계없이 임용 1년 이내에 신입교원워크숍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(신설 2015.11.01.)

제 13 조 (기타사항)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천대학교 학칙, 의학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르며,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(개정 2015.11.01.)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